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82

발의연월일: 2020. 7. 29.

발 의 자:이정문・신동근・문진석

김홍걸 · 민형배 · 안민석

기동민 · 김원이 · 조승래

김병기 · 황운하 · 김철민

서영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 선고 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도록 하면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판결서의 기재사항 중 이 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판결서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패소의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음에 따라 소액사건의 당사자가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항소심에서 사건에 관한 주장을 함에 있어 불편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판결서에 관한 불편을 제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제11조의2제3항 삭제). 법률 제 호

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안

少額事件審判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를 제기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1條의2(判決에 관한 特例) ①	第11條의2(判決에 관한 特例)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判決書에는 민사소송법 제20	<u><</u> 삭 제>
8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